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6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김형동·안철수·박덕흠

유용원 · 김위상 · 구자근

임종득 • 조지연 • 이달희

임이자 • 문금주 • 허성무

임광현 · 강승규 · 이성권

박성민 · 염태영 · 김승수

임미애 • 전진숙 • 최은석

김원이 · 이인선 · 임호선

강선영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주요 해결방안 중 하나로 지역별 국립 의과대학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.

그런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의학과가 설치된 대학별로 대학병원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에 는 의료실습 등에 대한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이로 인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국립 의과대학이 원활한 교육과

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의과 대학의 원활한 신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설립)"을 "(설립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한 관련대학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실습교육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학과를 신설하는 국립대학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<u>(설립)</u> ①・② (생 략)	제5조 <u>(설립 등)</u>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대학병원이 설립되지 아니
	한 관련대학은 원활한 교육과
	정 운영을 위하여 의료실습교
	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
	<u>할 수 있다.</u>